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이용정원) ① 본 시설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9명을 정원으로 한다.

② 이용정원은 시설장이 시설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2조(이용 시간) 시설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 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급여 대상자

② 제1항 및 제2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시·군·구에서 다음 각호의 이유로 시설에 입소 의뢰한 대상자

제4조 (입소자 모집 방법) 입소자 모집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홍보
2. 시설 직원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등
3. 대면 및 전화 상담 후 방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시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제4조(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본 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20%(본인부담액 비율)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이용료는 매월 시설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③ 비용면제 및 감면대상자라도 행사비, 식대(간식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은 물가 변동 즉, 급식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변경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2조(이용료 변경 안내) ①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조(이용료 변경 절차) 이용료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내용 및 계획 수립)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3.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본인부담금 감면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감경 처리하고,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

③ 입소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집중관찰 대상 보호)

1.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집중관찰과 의료처치 등)는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상급 침실 및 개별적인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은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조(특별보호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서비스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조(응급상황 대처) ① 입소자의 급격한 상태변화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후송 및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갑작스러운 병원 후송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즉시 동행할 수 없을 시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제2조(감염병 예방 및 조치) ① 입소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신규 입소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한다.

제3조(정기적인 병원 진료) 입소자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들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협약의료기관의 진료) ① 협약의료기관의 계약의사는 월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처방전 발급, 간호사 업무지시, 현장에서 서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를 취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원장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시설물 배상책임) ①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및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사용 제한) ① 원장은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 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입실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시설의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① 시설은 종사자가 급여 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